

「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발 의 자: 장미경 · 정지원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 · 김민성 · 김정도 · 이명희 · 이상호 · 이지연 ·
허민근 의원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· 심리적 ·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,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모자보건법」 제4조
 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서도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,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지원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,

- 매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지역 상담 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